학생선도규정

(92 [illegible])

학성고등학교

학 . 성 고 등 학 교

680-012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 2동 1674 / 전화(0522) 72-7481 / 전송 72-7481

문서번호:
시행일자: 1992. 12. 15(년)
(경유)
수 신:
참 조: 내부 결재.

취 급		학 교 장
보 존		
교 감		교무 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연구 과학
기 안	학생주임	새마을 체육 협 조

제 목: 학생 생활지도 규정 개정

생활지도규정. 제38조 1항과.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 음.

	현 행 조 항	개 정 조 항
제38조1항	행동발달 상황에 "다."가 2개 미만이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자.	행동발달 상황에 "다."가 없으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자.
제38조2항	1). 2). 3).	4). 3년 개근. 정근자는 1년 개근상에 제외한다.

본 규정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끝.

※ 본규정 개정의결 일자는 92년 12월 14일 교무실에서 의결함.

제 7 장 학 생 포 상

제 38 조 : 학생 포상은 우등상, 정.개근상, 공로상, 모범 학생상 등을 두되, 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92.12.15 개정

1) 우등상 : 교과 성적이 당해 학년의 환산 평균이 4.25이상이고 행동 발달 상황에 ~~다가 2개 미만이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다"가 없으며

2) 정. 개근상

1) 1년 개근상 : 연간결석, 지각,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 (단 휴가중 전입이 아닐 때는 제외된다)

2) 3년 개근상 : 3개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

3) 3년 정근상 : 3개년간 결석 1일 이내인 자

4) 3년 개근. 정근자는 1년 개근상에서 제외한다.

3) 공로상 :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냈거나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을 직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4) 모범 학생상 : 충. 효. 지. 덕. 체. 예. 기의 7개 분야로 나눈다.

1) 충의상(忠) : 국가관이 투철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지도력이 뛰어난 학생

2) 효행상(孝) :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한 학생

3) 학업 우수상 (知) : 학업 성적이 탁월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4) 선행상(德) : 학우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돕고 이웃 사람에게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

5) 체육상 (体) : 운동 기능이 뛰어나고 체육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

6) 예능상(芸) : 음악, 미술, 문학등 예능 방면에 특출한 재능이 있는 학생

7) 기능상(技) : 과학, 기술, 기타 부분에 독특한 기능이 있는 학생

8) 위의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교무회의 심의로서 시행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전화 :)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 · 준영구 10 . 5 . 3 . 1	교 장		
수신처 보존기간	1989. 4			
시행일자	1989. 4. 3			

보조기관	교감	협조기관	교무주임	과학주임	문서통제
			연구주임	윤리주임	
			서무실주임	1년주임	
기안책임자	학생주임		체육주임	2년주임	발송인
			교도주임	3년주임	

경유 수신 참조	서무 계	발신명의	

제 목 학생 생활 지도 규정 개정

학교 교육의 여건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교 학생 생활지도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 : 학생 생활지도 규정 1부. 끝

※ 1989. 3 31 (금) 학생 생활 지도 규정(안)을 제출하여 교무회의 심의를 거쳤음.

학생 생활 지도 규정

학성고등학교

학 생 생 활 지 도 규 정

학성고등학교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본교 재학생들의 생활 규범으로 미래 사회의 역군으로서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육성하는데 있다.

제 2 장 용 의 복 장

제 2 조 : 교내외에서 항시 지정된 교복에 뺏지와 명찰을 패용하고, 학생증을 소지하며, 과다한 노출이나 기성세대의 모방은 금한다.

제 3 조 : 두발은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하고, 앞머리는 눈섭을 덮지 않고 단정해야하며, 스포츠 형 머리를 권장한다.

제 4 조 : 신발은 운동화를 원칙으로 하고 고가품은 지양한다.

제 5 조 : 가방은 자율적으로하되, 고가품이나 성인용은 지양하고, 장신구는 일체 금한다.

제 6 조 : 지정된 복장 (교련복 및 체육복)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제 휘장을 부착하며, 학교에서 허가한 뺏지 이외는 패용을 금한다.

제 3 장 출 결

제 7 조 : 교칙에 의거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학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거나, 또한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인 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경우 (병력 관계등)

3)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 실습, 훈련참가등으로 출석

하지 못한 경우

4) 상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부모상 : 5일 이내

2) 조부모상 : 3일 이내 (승중 일때 5일 이내)

3) 백숙부모 및 형제 자매 : 2일 이내

제 8 조 : 병결과 사고결

결석은 병결과 사고결로 구분하여처리하되,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병결로 처리하는 경우

(1) 결석한 날짜로부터 3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할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짜로부터 3일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투약 처방전, 약구입 영수증등)을 첨부한 담임 교사의 병결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보호자 명의로 3일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고결로 처리하는 경우

(1) 무단 결석한경우

(2) 결석계를 제출하였더라도 제 7조의 각 항과 같은 사유 및 병으로 인한 결석이 아닌 경우

(3) 징계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제 9 조 : 지각, 조퇴, 결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소정 등교 시간이후 (학생조례) 출석했을 때는 지각 1회로 처리한다.

2) 같은 날짜 결과 1회 이상은 결과 1회로 처리한다.

3)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 하였을 때는 조퇴 1회로 처리한다.

4) 동일 날짜의 지각과 결과와 조퇴는 지각 1회로 처리한다.

5) 양호실 이용자는 병결과로 한다.

6) 학교장이 허가하거나, 인정한 사유 (7조 각항)로 인한 지각, 조퇴,결과는 매월말 출석 상황 통계 처리시 그 사유를 명기하고 지각, 조퇴,결과는 회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7) 부득이 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학급 담임이 해당 일짜의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매월 말 출석 상황 통계 처리시 그 회수를 () 속에 별도로 기재한다.

8) 불의의 사고나 장기 요양 (2개월이상)을 필요로 할 때는 학칙에 의거 휴학을 조치할 수 있다.

제 4 장 교 내 외 생 활

제 10 조 : 등교후 무단으로 조퇴나, 외출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는 담임교사를 거쳐 학생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11 조 : 공공물을 손괴,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께 보고하고 변상해야 한다.

제 12 조 : 허가 없이 좌석 변경이나, 무단 타 학급의 출입을 금한다.

제 13 조 : 교내 게시물을 변경, 말소, 훼손 해서는 안되며, 각종 게시 관계는 학생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4 조 :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클럽이나 단체에도 가입할 수 없다.

제 15 조 : 교내외의 모든 집회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16 조 : 집회가 필요할 때는 집회 24시간 전까지 집회 허가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일 시 2) 장 소 3) 목 적 4) 참가 인원

5) 안 건 6) 지도 교사명

제 17 조 : 금품, 기타 물품 수집, 거래 알선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

제 18 조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음 장소에 출입을 금한다.

1) 공연장 2) 다방이나 요정 3) 만화방 4) 당구장

5) 기타 유기 유흥장

제 19 조 : 교내에서 상 행위를 하는 외래인이 들어 왔을 때에는 즉시 교무실에 신고한다.

제 5 장 주 번 근 무

제 20 조 : 주번은 1주간씩 윤번제로 한다.

제 21 조 : 주번 학생은 아침 자율 학습 실시 시간 전에 등교하여 학습 환경을 정비하고 주번 교사 지도하에 생활 목표 실천에 임한다.

제 22 조 : 주번 학생은 주 생활 목표 실천을 위해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 한다.

1) 음료수 관리 및 실내 청소
2) 학급 비품 정리 및 점검 (유고시 즉각 담임께보고)
3) 칠판 지우기와 교실 환기
4) 전달 사항 신속 전달 (칠판에 게시)
5) 학급 일지 기록
6) 학급 종례후 일지를 검열 받아 주번교사께 제출

제 23 조 : 주번 인수 인계는 매주 말 대청소가 끝난후 실시 한다.

제 6 장 학 생 징 계

제 24 조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퇴학

제 25 조 (징계 기간) : 징계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근신 : 3일 이내
2)유기 정학 : 10일 이내
3) 무기 정학 : 11일 이상

제 26 조 (징계 결정)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생된 징계 사항에 대하여 생활 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명한다. (단,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은 직원 회의 심의를 거친후 이를 결정한다)

제 27 조 (생활지도 위원회)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 지도 위원회를 두며, 생활지도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구성한다.

1) 교감 2) 각부 주임 3) 징계 사유 해당 학생의 담임

4) 징계 사유 발견자 5) 교내외 지도계

제 28 조 (징계의 방법) : 근신을 받은 학생은 매일 등교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근신 수학하게 하며, 매일 반성문을 기록하여 담임을 거쳐 학생부에 제출하고 정학을 받은 자는 학교에서 부여하는 과제물과 반성문을 작성하여 매일 지정된 시간에 담임을 거쳐 학생부에 제출한다.

제 29 조 (징계의 시작) : 징계의 시작은 학교장이 결정한 날로부터 시작하며, 근신은 출석으로 인정하나, 근신이외의 징계는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 30 조 (근신 해당 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지각, 조퇴, 결과가 무상한 자

2) 수업 태도 불량 및 면학 분위기 저해자

3) 학생 금지 구역 출입자

4) 교내에서 고성 방가 및 소란을 피운자

5) 교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하도록 조장한 자

6) 무단 외출, 월장 2회 이상인 자

7) 무단 결석 2일 이상인 자

8) 이상의 각호와 상응한 행위를 한 자

제 31 조 (유기 정학 해당 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정학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고사 부정 행위를한 자 및 이를 동조한 자
단, 당해 과목은 0점으로 처리한다.

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자 중 교육적으로 징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고의적인 싸움이나, 타인을 구타한 자

4) 도박을 한 자

5)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자

6) 학교장 또는 교사의 정당한명령이나 지시를 고의로 위반했거나 반대한 자

7) 화재 위험처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장난을 한 자

8) 근신 징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9)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무단결석 3일 이상인 자

10) 근신을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재차 근신에 상응한 행위를한 자

11) 이상의 각호와 상응한 행위를 한 자

제 32 조 (무기정학 해당 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학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체나 서어클을 조직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자

2) 남녀간 풍기 문란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3)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거나 방조한 자

4) 반복하여 음주한 자 (2회 이상)

5) 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자

6) 상습적 마약류 복용 자

7)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한 자

8) 유기 정학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9) 유기 정학 처벌을 받은 후 재차유기 정학 사유에 상응한 행위를 한 자

10) 실내에서 흡연, 음주, 방뇨, 배변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

11) 이상의 각호와 상응한 행위를 한 자

제 33 조 (퇴학 해당 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부정 행위를 할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탐지 또는 절취한 자

2) 고사에 불응할 것을 선동했거나 동조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4) 교권을 모독한 자

5) 교내 기물,공고 시설을고의로 파괴한 자

6)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한 자

7) 외부의 불순 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 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자

8) 불온 문서를 고의로 은닉했거나 탐독 또는 제작, 게시 낙서 및 살포 한 자

9) 남녀 간에 풍기문란으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자

10) 음주 후 폭행 난동을 부린 자

11)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

12)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자

13) 형법상 유죄로 결정된 자

14) 무기정학 처벌중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5) 무기정학 처벌을 받은 후 1개년간 재차 무기정학에 상응한 행위를 한 자

16)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제 34 조 (징계의 공고) : 학생 징계가 결정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게시판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35 조 (징계의 감면) : 징계중에 반성의 정이 현저한 학생은 심의를 거쳐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 36 조 (징계 효력의 폐기) : 과거에 받은 유기정학 이하의 징계는 받은 후 1개년이 경과함으로서 자동적으로 폐기한다.

전 항의 기간 내 일지라도 반성의 정이 현저하며 대 내외적으로 뚜렷한 선행이 인정 될 때에는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 37 조 (규정 이외의 징계 사유) : 본 규정 외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직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

제 7 장 학 생 포 상

제 38 조 : 학생 포상은 우등상, 정.개근상, 공로상, 모범 학생상 등을 두되, 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우등상 : 교과 성적이 당해 학년의 환산 평균이 4.25이상이고 행동 발달 상황에 ~~'다'가 2개 미만이며~~ '다.가 없으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92.12.15 개정함)

2) 정. 개근상

1) 1년 개근상 : 연간결석, 지각,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 (단 휴가중 전입이 아닐 때는 제외된다)

2) 3년 개근상 : 3개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

3) 3년 정근상 : 3개년간 결석 1일 이내인 자

4). 3년 개근 정근자는. 1년 개근상에. 제외한다. (92.12.15 개정함)

3) 공로상 :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냈거나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을 직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4) 모범 학생상 : 충. 효. 지. 덕. 체. 예. 기의 7개 분야로 나눈다 .

1) 충의상(忠) : 국가관이 투철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지도력이 뛰어난 학생

2) 효행상(孝) :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한 학생

3) 학업 우수상 (知) : 학업 성적이 탁월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4) 선행상(德) : 학우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돕고 이웃 사람에게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

5) 체육상 (体) : 운동 기능이 뛰어나고 체육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

6) 예능상(芸) : 음악, 미술, 문학등 예능 방면에 특출한 재능이 있는 학생

7) 기능상(技) : 과학, 기술, 기타 부분에 독특한 기능이 있는 학생

8) 위의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교무회의 심의로서 시행

할 수 있다.

제 8 장 행동 발달 사항 심의 위원회

제 39 조 (목적) : 학생들의 행동발달 사항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둔다.

제 40 조 (구성) : 학년 단위로 15명 이내로 아래와 같이구성한다.

위원장 : 학년 주임

위 원 : 각반 담임, 교도주임, 학생주임, 교과담임 교사 2-3명

제 41 조 (심의 기준 방법)

1) 기 준 : 생활기록부 취급 요령 (문교부령제286호(79.7.9))6항에 '행동 발달사항 평가'에 의거한다.

2) 방 법 : 담임이 평가한 행동 평가의 발달 사정안이 생활기록부 취급 요령 6항 행동발달 사항 평가의 적합성 여부와 학생 개인의 상벌, 징계, 행동 누가 기록 등에 의해 심의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구 규정은 폐지한다.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전화:)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 · 준영구 10 · 5 · 3 · 1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1985. 12. 23			

보조기관	교감	협조기관	교무 영주 새마을 교도 과학 체육 1학년 2학년 3학년	문서통제
기안책임자	안 종 현			발송인

경유 수신 참조	내부결재	발신명의	

제 목 학생선도규정 개정

선도규정 제11조 2항과 제12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조항	개정조항
제11조2항 : 전입생은 제외된다.	전입생은 전입학 과정에서 개근으로 인정될 경우, 개근상을 줄 수있다.
제12조2항 ; 전입생과 복학생은 제외된다.	복학생은 제외된다.

끝

학성고등학교 학생회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회는 학성 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 3 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중이거나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때는 그 기간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 4 조(권리,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금지활동) 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

제 6 조(지도 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 7 조(기능) ① 이 회는 제 1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의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②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 위원회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지도 위원회는 이 회의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효력정지)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 2 장 임 원

제9조(임원)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제10조(부서) 이 회는 다음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총무부 : 이 회의 사업 기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활동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4. 지도부 : 학내질서 및 교풍확립과 학교정화에 관한 사항

5.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 및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

6. 훈련부: 회원의 훈련 활동에 관한 사항

제 11 조 (임원의 업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 12 조 (임원 선출 및 자격) ① 회장, 부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 임원선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수.우에 속하며 통솔능력이 있는 자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 13 조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 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동안 재임한다.

제 3 장 대 위 원 회

제 14 조 (구성) 대위원는 회장, 부회장 및 각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 (기능) 대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2.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제 16 조 (회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 학기초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2. 재적 대의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
4. 학생지도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

④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 일전에 학생지도 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 17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 19 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지 도 위 원 회

제 20 조 (구성) 1. 학생지도 위원회는 전교직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의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각부에 지도위원 1 인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 21 조 (기능) ① 학교지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2 조 (회비) ① 이 회의 경비는 학생회비로 충당하며, 이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의 금액은 매년 대의원회에서 정하되,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지도위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학교 회계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담당 지도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23 조 (회계년도) 학생회의 회계년도는 3 월 1 일부터 다음해 2 월 말 까지로 한다.

제 24 조 (예산편성) ① 학생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10 일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예산안이 소정기일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학생회장은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예산 성립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결산) 결산을 회계년도 만료후 20 일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1986 학년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학생회 정.부 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정

제 1 조 (선거권) 본교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 2 조 (피선거권) 피서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본교 재학생으로서 전학기 성적이 원칙적으로 평균성적 80 점 (환산점) 이상인 자.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출석상황이 90 % 이상인 자.

제 3 조 (선거방법) 회장, 부회장은 대의원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은 학급 반장이 겸한다.

제 4 조 (임기)

① 정 · 부 회장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② 임원이 궐위될 때에는 1 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 5 조 (선출시기)

선출시기는 매학년도 2 학기중에 선출한다. 단, 2 학기중에 실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시일내 실시한다.

제 6 조 (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

제 7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3인의 학생지도 위원회 위원, 정.부 학생회장 및 대의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학생지도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선거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일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일체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일체

제 8 조 (입후보자등록)

① 정.부 회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2. 선거권자 5 인 이상을 추천서
 (단, 추천자는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3. 지도주임 또는 담임교사 추천서
4. 성적증명서 사본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 9 조 (선거운동 등)

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행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 비용은 학생자치 회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갖는다. (단, 소견발표의 시간,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5 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 11 조 (투표 및 개표)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성명아래 기표한다.

② 선거인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③ 투표소 내에는 위원회 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 12 조 (당선인)

① 위원회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학교성적 및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유권자 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1/3이상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 13조(별칙) 위원회는 선거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①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②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③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④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⑤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 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 14조(기타) 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86년 3월 1 부터 시행한다.

학생회 간부 승인 규정

제 1 조 본 학생고등학교 학생회의 간부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 2 조 학생회 간부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능력이 있는 자.
2.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4. 출석상황이 90 % 이상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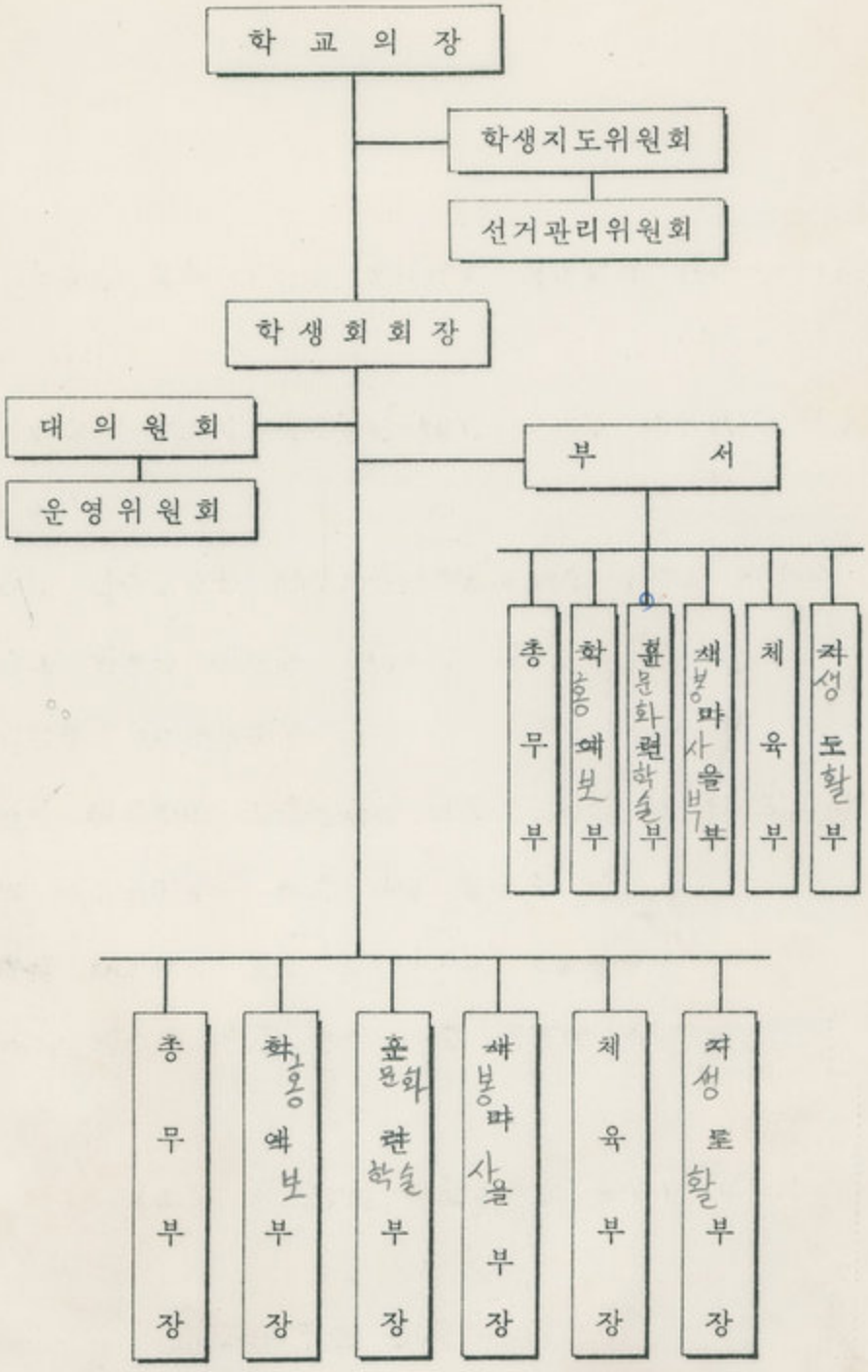
제 3 조 학생회 간부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제 4 조 학생회 각부서장은 학생회장이 지명하여 학교장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 5 조 학생회장은 선임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전조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제 6 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편 제 표


학 교 의 장
학생지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학 생 회 회 장
대 의 원 회
운 영 위 원 회
부 서
총 무 부
학 예 부
체 육 부
총 무 부 장
체 육 부 장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전화번호)	건 결 규 정 조 항 / 건 결 사 항
처리기간			
시행일자	1985. 2. 22		
보존연한			

보조기관					협조	
	교 감		교무주임	연구주임		체육주임
			윤리주임	서무주임		방송주임
	지도주임		교도주임	과학주임		1학년주임
						2학년주임
기안책임자	김성환					3학년주임

경유 수신 참조	내부결재	발신		통제	

제 목 학도호국단 규칙 개정

본교 학도호국단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 ; 학도호국단 규칙 1부. 끝

결재	정서
	관인
	발송

학 도 호 국 단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설치 및 명칭) 호국학도로서의 사명완수와 학생자치 활동을 신장하기 위하여 본교에 학도호국단을 설치한다.

본교 학도호국단의 명칭은 학성고등학교 학도호국단이라 칭한다.

제 2조(기능) 학도호국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정신교육의 실시 및 활동
2.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의 유지복구 및 지역 방위업무의 지원 또는 협조
3. 학술 예술 및 새마을운동등 지역개발활동
4. 기타 학생 자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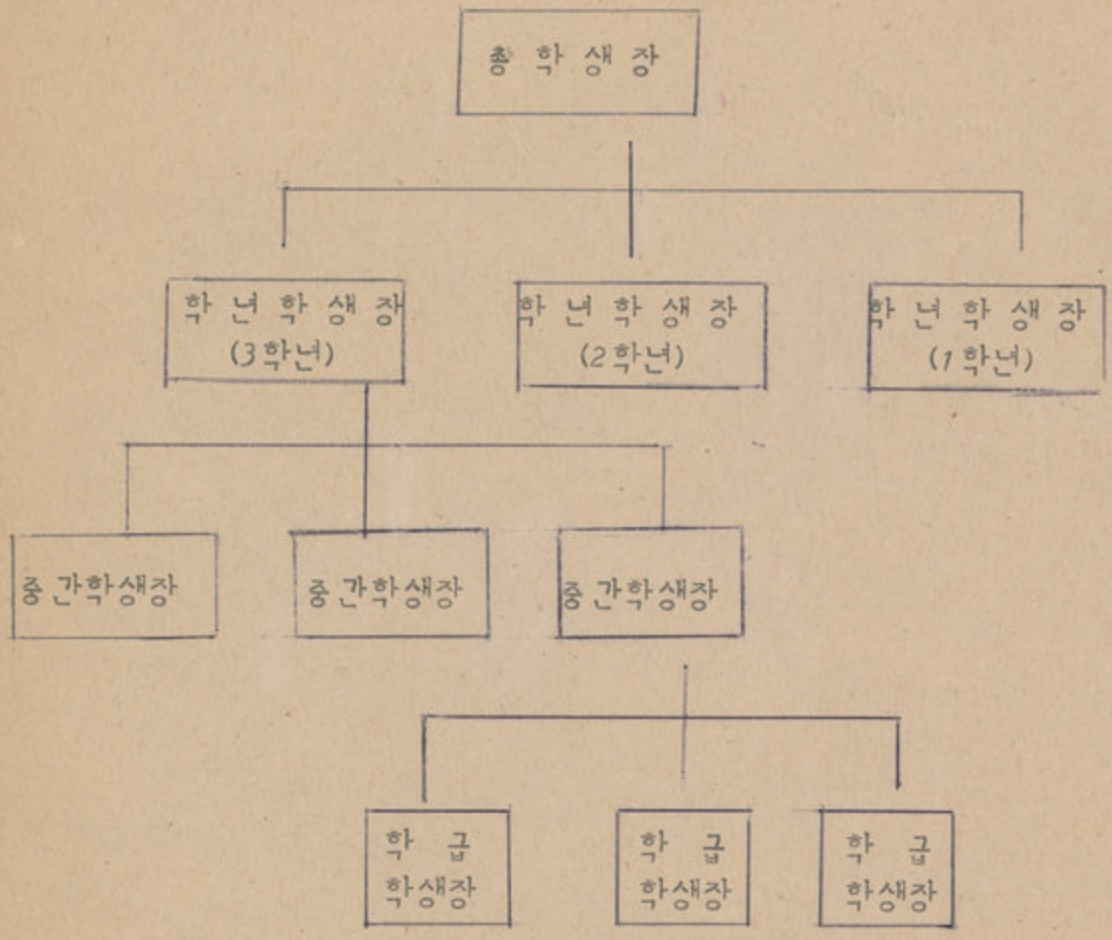
제 3조(단원)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학성고등학교 학도호국단의 단원이 된다.

제 4조(편성) 1. 학도호국단에는 학생제대를 두되 학생제대의 편성은 단위제대 중간제대 및 최고제대로 구성하며 각 제대는 학년 또는 학급별로 편성할 수 있다.

2. 학생제대는 각 제대별로 1인의 학생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학생장을 둘 수 있다.

3. 최고제대장은 총학생장이라하고, 중간제대장은 학년학생장 단위 제대장은 학급학생장이라 한다.

4. 본교 제대를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총 학 생 장
학 년 학 생 장 (3학년)
학 년 학 생 장 (2학년)
학 년 학 생 장 (1학년)
중 간 학 생 장
중 간 학 생 장
중 간 학 생 장
학 급 학생장
학 급 학생장
학 급 학생장

제 2 장 각급 재대장 및 부서장의 선임

제 5조(방법) 1. 총학생장은 각급 학생장단(중간제대, 단위제대학생장)에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중간제대장(부학생장) 및 부서장은 지도위원(학교지도위원을포함)에서 단위제대장(부학생장)은 학급에서 선출한다.

3. 학급 제대장은 겸임할 수 없다.

4. 총학생장에 입후보 할 학생은 신학기 개학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도위원회에 등록한다.

5. 선거운동은 공명정대하게 하여야 하며, 만약 금품거래가 있거나 고칙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시는 등록취소한다.

제 6조(자격) 총학생장, 각제대장, 부서장의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출되는 제대장(총학생장, 학급학생장)의 자격

(1) 전학기 성적이 1/3 이상인 학생

(2) 학칙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 학생

(3)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5) 각급 제대장의 5인 이상 추천을 받은 학생 (학급학생장 선출의 경우는 제외)

2. 선임되는 제대장(학년학생장, 중간학생장)의 자격

(1) 학칙에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학생

(2)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3. 부서장의 자격

(1) 학칙에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학생

(2)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 당해 부서의 적성을 가진 학생

제 7조(직무) 1. 총학생장은 학교장의 명을 받아 학도호국단 및 부서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총학생장은 학교의 발전과 학생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한다.

3. 각학년장은 상급학생장의 명을 받아 부과된 업무를 수행한다.

4. 각학년장은 학생들을 선도하고 학교의 질서유지에 노력한다.

5. 부총학생장(부학생장)은 총학생장(학생장)을 보좌하고 총학생장(학생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조(임기) 각급 제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9조(부서설치) 1. 학도호국단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6개부서를 둔다.

2. 부서장의 업무와 부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부 서 명	분 장 업 무
총 무 부	학도호국단의 기획서무획의 주관 및 운영위원회 운영 통보
훈 련 부	학도호국단의 훈련 및 동원업무
학 예 부	학술 및 문화 취미 오락 활동
새마을부	새마을운동 각종 봉사활동
체 육 부	학생체위 향상 및 친선활동
지 도 부	학생규율에 관한 활동

제 10조(각부서활동) 1. 각부서별 모든 활동은 학교지도위원회 전담지도위원회의 지도하에 행하여야 한다.

2. 각부서에서는 연간 사업 계획에 따라 활동한다.

제 11조(운영위원회) 1.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

하여 학도호국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12조(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제대 학생장(부총학생장포함)및 부서 의장으로 한다. (50명)

제 13조(의장.부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총학생장이 된다.

제 14조(운영위원회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도호국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도호국단의 단비책정에 관한 사항
4. 학도호국단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도호국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15조(의결)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소집) 운영위원회 소집은 학도호국단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실시한다.

제 17조(상임위원회)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단규로 규정한 사항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내에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총(부)학생장, 학년학생장 부서의장으로 한다.

제 18조(소집) 상임위원회 소집은 필요시 실시한다.

제 19조(학술.예술.체육 및 봉사활동 등) 1. 학술.예술.체육.봉사활동등 각종 학생활동의 조직과 그 범위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하고 다만 학생 활동을 위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조직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학교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도호국단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 총학생장은 학생이 대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0조(단비등) 1. 학도호국단의 단원은 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단비는 학도호국단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학도호국단이 단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단비의 금액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학도호국단 학교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위원회 내시에 의하여 정한다

4. 제 1항의 단비의 수납 및 지출등에 관하여는 학교지도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 21조(학교지도위원회) 1. 학도호국단의 운영과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학도호국단 학교지도위원회(이하, 학교지도위원회라한다)를 둔다.

2. 학교지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지도위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장은 학교장이되고 부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4. 지도위원은 각부 주임교사 및 학년주임, 교련교사 2명으로 한다.

제 22조(학교지도위원회의 기능) 학교지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도호국단의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사항
2. 단규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단비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학술, 예술, 체육, 봉사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안보에 관한 사업과 활동에 관한 지도
6. 기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장 부 칙

1. 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도위원 위원장이 정한다.

2. 본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전화번호)	전결규정 조항 /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행일자	1985. 2. 22		
보존연한			

보조기관			협조	
교 감		교무주임 연구주임		체육주임 방송주임
		윤리주임 서무주임		1학년주임
지도주임		교도주임 과학주임		2학년주임
기안책임자	이상철			3학년주임

경유 수신 참조	내부결재	발신		통제	

제 목 학생선도규정 개정

학교 교육의 여건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교 학생선도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 ; 학생 선도규정 1부. 끝

정서	
관인	
발송	

학 생 선 도 규 정

학성고등학교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규정은 학성고등학교 학생 선도 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적용범위 및 포상 징계의 결정)

(1) 본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 포상 및 징계는 학생 선도 위원회(이하 "선도 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학교장은 선도 위원회의 품의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 2 장 선 도 위 원 회

제 3조(선도위원회의 구성)

(1) 선도 위원회는 지도부 교사와 해당학년 주임, 교도주임 및 해당 학급 담임교사로 구성되며 지도 주임이 의장이 된다.

제 4조(선도 위원회의 업무)

선도 위원회는 학생포상 대상자의 선정과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5조(선도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1) 선도 위원회는 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선도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해당 담임교사 및 관계교사의 의견을 참고로 한다.

(3) 선도 위원은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포 상

제 6조 (포상자의 선정)

(1) 포상자의 선정은 포상 대상자의 공적내용이 학교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2)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수상하지 아니한다.

제 7조 (포상 대상자의 추천)

(1)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기준에 의거 반드시 추천 교사가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주무주임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여야한다.

(2) 공적조서를 제출 할 때는 지도부의 처벌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8조 (상의 종별) 상의 종별은 우등상.1년 개근상.3년개근상.3년정근상.공로상의 5개 종별로 한다.

제 9조 (우등상의 기준)

(1)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계열석차 5%이내에 해당하고 환산 총점이 85%이상 인자.

(2) 당해 학년의 행동 발달 사항 중 "다"가 2개 이상 되지 아니한자.

(3) 징계 받은 일이 없는자

제 10조 (1년 개근상 기준)

(1) 당해 학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자.

(2) 전입생은 개근상에서 제외된다.

제 11조 (3년 개근상)

(1) 3개년간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는자

(2) 전입생은 제외된다.

제 12조 (3년 정근상 기준)

(1) 3개년간 결석이 없고 지각.조퇴.결과가 도합 2회 이하인자

(2) 전입생과 복학생은 제외 된다.

제 13조 (공로상 기준)

(1) ~~학도호국단~~ 간부로서 그 활동에 뛰어나고 학교 발전과 교육

선양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자.

(2) 선행 또는 효행이 뚜렷하여 교내는 물론 지역사회에 계도적 역할을 한 공로가 있는자.

(3) 도단위 이상의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로서 교외 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큰자

(4) 특별활동 운영에서 헌신적으로 활동 한 자로서, 그 공적이 뚜렷하여 표창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이상의 각 항과 상응하는 공로가 있는자

제 4 장 징 계

제 14조 (징계의 심의 기준) 선도 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동, 학업성적, 가정환경, 공적사실, 혐의내용 및 개전의 정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15조 (징계의 종별) 징계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제 16조 (징계의 시행 및 기간)

(1) 징계의 시행은 학교장이 결정한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징계기간은 근신은 3일이내, 유기정학은 2일이상 5일이내, 무기정학은 6일 이상으로 한다.

(3) 유기정학.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자는 처벌 기간을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유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지정한 날에 학교에 등교시켜 특별지도를 받게 하며, 기간중 반성문 봉사활동 특별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반성토록 지도한다.

(5) 근신 이상의 징계 시는 징계 대상 학생의 보호자에게 징계통지서를 보내어 징계 사실을 알리고 당해 학생의 선도를 협의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내교를 요구한다.

제 17조 (경고)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고 처분 한다.

(1) 학생답지 못한 용의 및 복장을 갖추고 있는자

(2) 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및 무계출 결석 1회 인자

(3) 교내에서 고성방가 및 소란을 피운자

(4) 허가없이 전체조례 및 공식 행사에 불참한자

(5) 일과시간 중 식당 이발소 등 교내외를 배회한자

(6) 상급생에 대한 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자

(7) 가택침 방뇨 배변 등을 지정 장소 이외에서 행한자

(8) 학생 상호간에 사소한 시비로 소란한 행위를 한자

(9) 금전이 관련된 오락을 한 자

(10) 교문 이외의 곳 으로 출입한 자

(11) 이상의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제 18조 (근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에 처한다.

(1) 지각.조퇴.결과가 무상한 자

(2) 흡연, 음주한 자 단, 담배, 술의 소지자는 흡연음주로 간주한다.

(3) 수업 태도가 불량하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자

(4)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제 19조 (근신 또는 유기정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 또는 유기정학에 처한다.

(1) 고사 부정 행위를 한 자 및 이를 동조한 자
단, 당해 과목은 영점으로 처리한다.

(2) 학교의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 한 자

(3) 경찰에 연행된후 훈방된 자 중 교육적으로 징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고의적인 싸움이나 타인을 구타한 자

(5) 도박을 한 자

(6) 음화 불량 서적 등 외설물을 소지한 자

(7) 학교장 또는 교사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고의로 위반 했거나 반대한 자

(8) 옐장, 수업시간 이탈 등 학교를 무단 이탈한 자

(9) 무단 가출로 1일 이상 결석한 자

(10) 화재 위험처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장난을 한 자

(11)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제 20조 (유기정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정학에 처한다.

(1) 상습적으로 흡연한 자

(2) 흉기를 소지한 자

(3) 근신 처벌을 받은후 동일 학년에서 재차 근신에 상응한 행위를 한 자

(4) 근신 처벌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5) 외설물을 교내에서 회람케 한 자

(6) 학교장의 허가없이 외부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7) 고고클럽 나이트클럽 주점 당구장등 학생 출입 금지 업소에 출입 한 자

(8) 허가없이 학교 건물 내에서 불을 태운 자

(9)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제 21조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에 처한다.

(1) 허가없이 단체나 서클을 조직했거나 이에 가입한 자

(2) 남.녀간의 풍기 문란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3)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자

(4) 반복하여 음주한 자

(5) 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자

(6) 환각제 본드 대마초를 소지 또는 복용한 자

(7) 학교장의 허가없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징수한 자

(8) 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시도한 자

(9) 기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자

(10)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제 22조 (무기정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유기정학 처벌을 받은후 동일 학년에서 재차 유기정학에 상응한 행위를 한 자

(2) 유기정학 처벌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3) 과외수업를 받거나 과외지도를 한 자

(4) 이상 각 항과 상응 한 행위를 한 자

제 23조 (무기정학 또는 퇴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학 또는 퇴학에 처한다.

(1) 부정행위를 할 목적으로 시험문제를 사전에 탐지 또는 접취한 자

(2) 고사에 불응할 것을 선동했거나 동조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자

(4) 교권을 모독한 자

(5) 교내 기물 또는 공공 시설을 고의로 파괴한 자

(6)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한 자

(7)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복용했거나 사용한 자

(8) 외부의 불순 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 행위나 정치성을띤 활동을 한 자

(9) 불온 문서를 고의로 은닉 했거나 탐독 또는 제작 게시 낙서 및 살포한 자

(10) 남.녀간의 풍기 문란으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자

(11) 음주후 폭행 난동을 한 자

(12)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

(13)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자

(14) 타인의 금품을 갈취 한 자

(15) 학생을 선동하여 학교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행동을 주동했거나 이에 동조한 자

(16) 교내에서 음주했거나 음주후 내교하여 타학생에게 영향을 미친 자

(17) 실내에서 흡연 음주 방뇨 배변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

(18)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제 24조 (퇴 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에 처한다.

(1) 성행이 불순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형법상 유죄로 결정된 자

(4) 무기정학 처벌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5) 재학 기간 중 무기정학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6) 고의로 방화한 자

(7) 이상 각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규정은 1985 년 3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전화번호 번)	전결규정 조 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교장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협조	교무	새마을
				연구	윤리
기안책임자	지도 82.2.11			교도	체육

경유 수신 참조	내부결재	발신		통제	

제 목 학생선도규정 개정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생선도규정이 너무 오래전에 제정되었고 앞으로 학생 두발, 교복 자율화 등 시대적 변천에 따른 학생 선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83학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 ; 학생선도규정 1부 끝.

정서
관인
발송